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8
----------	------

제출일자: 2015. 12. 22.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상위법 인용조항 수정 반영(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의3, 제49조 및 제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1. 25. ~ 12. 16.)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주택법」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 43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 43조제9항----- ----- ----- -----.</p> <p>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p> <p>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새로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관리국 주택과 행정6급 유동선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신현식